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No. 2021-					
소관부서	시행년도	행정상 조치	재 정 상 조 치		신분상 조치
			조치방법	금액(천원)	
○○○○○처 (○○○○○○○○부)	2021년	권고	-	-	-

제 목 :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

□ 현황(개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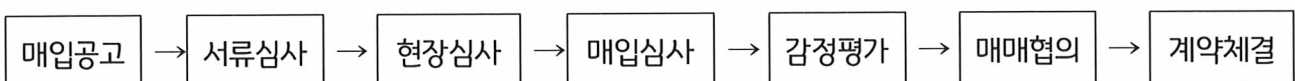
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(이하 “매입임대주택사업” 이라 한다)은 도심 내 최저 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, 개·보수 후 저렴 하게 임대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부터 2021년 현재까지 경기도 29개 시·군 2,257호를 매입하여 임대 중에 있다. 매입 임대주택사업은 ○○○○○처 ○○○○○○○부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,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.

(매입임대 현황)

(단위: 호)

연 도	‘12년	‘13년	‘14년	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	‘21년	합 계
합 계	202	180	95	148	196	234	350	385	430	37	2,257
개 인	194	164	83	148	172	197	309	225	296	29	1,817
개인법인	-	-	-	-	-	-	-	10	6	-	16
법 인	8	16	12	-	24	37	41	150	128	8	424

○ 기존주택 매입절차



□ 관련법령(판단기준)

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규정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인「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1108호)이 있으며,公社 규정으로는「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」에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주택의 매입, 공급, 임대운영 등 업무전반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.

□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최근 ○○공사의 매입임대주택사업 비리의혹¹⁾과 관련하여 公社가 추진하는 동일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감사²⁾를 실시한 결과, 담당부서인 ○○○○○○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그러나, 기존주택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.

□ 행정상 조치(요구) 사항

○ 기존주택 매입 시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“권고”

- 公社 직원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택은 매입신청 불가
- 최종 매입심사 시 외부위원 과반이상 의무 참석

☞ 관련부서에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라며,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

【관련부서】 : ○○○○처 ○○○○○○부. 끝.

1) 【MBC뉴스데스크(5.21)】 ○○ ○○본부 ○급 출신 퇴직자 본인과 부인, 그리고 처남 명의까지 동원해 주택 125억 원어치를 지어 ○○에 팔았다. ○○ ○○본부의 현직 간부가 미분양 주택 수십 채를 사주는 대가로, 브로커를 통해 업자 돈을 받은 게 적발됨. 이 간부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함. ○○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함.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매입임대주택 목록을 입수해 비리 사슬을 파헤치기로 함.

2) 감사내용 : 자진신고 안내 및 관리비리 제보조사, 公社 임직원 등 소유주택 매입여부 조사, 다수 매도자 조사, 매도 탈락자 샘플링 조사 등